

## ■ 구비서류 안내

구분	내용				
기본 서류	1. 신분증, 인감도장 2. 인감증명서 1부 (본인발급) * 주민센터 3. 주민등록등본 1부 (세대원 전부포함, 주민등록번호 및 관계 등) * 주민센터 4. 주민등록초본 1부 (과거주소변경 내역 포함) * 주민센터 5. 가족관계증명서 1부 * 주민센터 6. 국세납세(완납)증명서 1부 * 주민센터 7. 지방세납세(완납)증명서 1부 * 주민센터 8.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* 주민센터 (최근 1년) ※ 지방세, 국세증명서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납부금액이 없어도 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9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* 건강보험공단(홈페이지 또는 APP) - 과거이력전부포함 10.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* 건강보험공단(홈페이지 또는 APP) - 최근으로부터 6개월 조회 ※ 대출신청자(채무자)의 건강보험자격 지역세대원의 경우 지역 세대주 또는 직장 가입자(배우자) 기준 준비 요망 11. 사업자증명원(해당호실 임대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류) 12. 분양계약서 원본 13. 분양계약 물건의 사업자 증명원 원본 또는 사본				
	근로자 (위촉 대상자 포함)	1년 이상 : 재직증명서,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회사 직인 날인) or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1년 이하 :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최소 3개월분,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서 (은행 통장 거래내역 출력본)			
	자영업자	1년 이상 : 사업자증명원(원본 또는 사본_최근 발급분), 소득금액증명원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6개월 이상 : 사업자증명원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/ 카드대금결재 등 통장 거래내역(필요 시 제출)			
	연금수급권자	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지급기관의 증명서, 연금 수령통장 거래내역조회서 (은행 통장 거래내역 출력본) 개인가입연금불가 / 연금의 경우에 소득에 준한 수준확인 또는 연금+근로소득 또는 연금+사업소득 가능			
	임대수입	임대사업지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, 임대료 입금계좌 거래내역조회서 (은행 통장 거래내역 출력본)			
	위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되거나, 대출금융기관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분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. ex) 신용점수 및 신용이력, 대출 대비 소득미비, 서류제출 미비				
인지세	대출금액	인지세액	대출금액	인지세액	납부방법
	5천만원 이하	-	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5만원	대출 승인대상 확정 시 sms 문자통보
	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7만원	10억원 초과	35만원	
인지세 납부 시 분양계약 호수와 성함 기재하여 입금요망 (예: 777홍길동) ※ 인지세법에 근거하여 고객과 은행 50%씩 부담 / 호수, 성함 잘못 기재 시 대출 불가					

## ■ 유의 사항

- 계약자 본인만 자서(대리인 불가)
- 본인 성명 및 생년월일 표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. (ex : 홍길동 O / 홍\*\* X)
- 방문 전 본인 소득 정보 및 신용정보(NICE 신용정보 기준 : 600점 이상) 확인 후 방문바랍니다.  
※ 신용정보 기준이하 대출거절, 소득은 결재 상신 후 결재 득해야 가능합니다.
- 전매는 양도인, 양수인 등 당행 방문하여 처리 가능합니다. (출장 불가) 당행의 내부심사 기준에 미달 시 채무 인수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서류보완은 당행이 요청한 시기까지 미비 시 대출 거절 또는 집행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문의는 해당 금융기관 영업기획3팀으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문의전화 : 02-3467-0100 (여신 / 영업기획 3팀 연결 요청시 상담 가능합니다)

해당부서 : 영업기획 3팀